▩ 해설강좌

국제환경경영 표준화와 환경라벨링의 동향

조재립
경희대학교 산업공학과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nalysi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Labelling

Jai-Rip Cho
Dept. of Industrial Engineering,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Today, as globalization continues and international trading blocks are formed, world markets are intensely competitive and abound in product variety, volume, complex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pecifically, green consumer's needs and expectations are changing and diversifying, resulting in a changed global environment for industry. Due to these changes, domestic companies are striving to achiev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SO 14000) certification. This is considered a basis step in meeting the guiding principle and practice of ISO/TC 207/SC 3 resolution.

In this paper, we will present three type (I, II, III) of Environmental Labelling programs to build a model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by analysing practitioner and stakeholder.

After companies establish an ISO 9000 quality system these companies should focus on improve toward their own Environmental Labelling program and continue to build ISO 14000.

1. 서론

무공해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려는 그린-컨슈머의 대두와 함께 환경보존 인식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의 증대는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이

스스로 강력한 환경보호법과 강화된 행정규제를 요구하게 되었고, 국제적으로는 환경보존을 위한 다자간 협상인 환경라운드(Green Round: GR)의 태동으로 주요 경제블럭들은 오염유발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강화를 위한 국제환경경영 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표준협회, 1994].

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경영표준은 기업이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규제로 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기업의 환경경영체제활동이 환경보호에 충실하고 있음을 인증해 줌으로써 산업환경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구환경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향후 GR 범위에 기업활동과 제조과정까지 포함될 경우 국제환경협약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기술장벽 내지는 보호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이건모, 1994].

이를 위해 국가표준 관리조직을 보강하고 규격을 확충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국제표준화 회의에 적극참여하고 산업계에 환경경영추진 확산운동을 전개하여 국내 환경경영인증의 착실한 준비와 주요 국가와의 상호인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증요구에 대비함으로 무역장벽을 해소함이 지극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환경경영표준화

이제 기업들은 법적규제는 물론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환경보호와 환경오염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려는 그린-컨슈머의 대두와 함께 환경보존인식이 급속히 높아짐을 볼때 환경경영에 둔감한 기업들은 향후 국내·국제 경제활동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다는 자명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더욱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기업의 경우는 아주 심각하며 이제 전 세계는 무역과 환경문제를 함께 다루는 환경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환경라운드(GR)란 환경문제를 무역에 연계시키려는 GATT의 다자간협상으로 논의되었거나 결정된 사항들을 94년 6월에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 산하에 무역과 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를 만든 것이다. 이제 CTE는 무역과 환경연계에 관련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세밀히 검토하여 97년 경부터 본격적인 환경라운드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이건모, 1994]

이에 따라 GR은 (1) 국가간 상이한 환경기준에서 오는 경쟁력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선진국들이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무역협상 움직임의 포괄적인 개념이며 (2) 국제환경협약은 특정물질에 대한 규제인 반면 GR은 전반적인 제품 및 기업활동 까지도 규제대상이 될 전망이고 (3) 각국의 환경규제에 대한 간섭은 물론 상품과 제조방법 및 공정에 까지 국제적인 규범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박운서, 1994]

따라서 GR의 기초작업은 WTO 내의 CTE에서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는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관련과제로 (1) 환경표준 (2) 기술규정 (3) 포장 (4) 라벨링 (5) 재활용에 관한 항목들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국별로 환경경영시스템이나 환경관련 라벨링, 용어 및 정의, 환경성능평가 및 제품의 전생애평가(LCA) 방법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결과 93년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캐나다의 토론토시에서 환경경영표준화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207 : TC 207)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바로 이 TC 207 산하에 7개 소위원회(Sub Committee : SC)를 구성하였고 각 SC별로 과제를 부여하여 표준화작업을 추진하며 이를 문서화 하고 있다.

3. ISO 14000 시리즈

선진국들은 7년 동안의 오랜 협상을 거쳐 UR이 타결되면서 "리우선언"의 실행단계로 환경라운드(GR)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간의 환경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따라 선진국들은 제품을 제조할 때 보다 많은 환경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제조단가의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자국의 환경을 보호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환경을 저해시키는 제조자나 제조국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의도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보호와 공해방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ISO는 국제환경경영의 표준화를 위해 산하에 환경경영위원회(TC 207)를 발족시켜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규격과 기준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ISO 14000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 국제규격은 제품, 공정 및 서비스에 관한 환경품질에 대한 규격이다. 향후 ISO 14000 시리즈는 구매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구들과의 연계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TC 207의 구체적인 표준화 대상은 다음과 같다[한국표준협회, 1994].

(1) 환경경영체제(EMS :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 SC 1
(2) 환경감사(EA : Environmental Auditing) : SC 2
(3) 환경라벨링(EL : Environmental Labelling) : SC 3
(4) 환경성능평가(EPE :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 SC 4
(5) 전생애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 : SC 5
(6) 용어 및 정의(T & D : Terminology and Definition) : SC 6
(7) 제품의 환경규격(EAPS : Environmental Aspects in Product Standards) : SC 7

ISO/TC 207에서 각 SC별로 과제를 부여하고 표준화작업을 추진하여 문서화 하려는 내용과 예상 완료시기 및 ISO 부여 번호체계는 〈표 1〉과 같다[이건모, 1994].

이 환경경영시스템의 ISO 14000 시리즈 표준을 제정하면 이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표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강제규정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ISO/TC 207 표준을 국내의 환경경영시스템 기준으로 정했다면 이 규격을 채택하거나 참조해야 하는 경우 기업들은 결국 ISO 14000 시리즈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는 적용을 받게되는 규정이다. 그래서 세계의 선진국들은 ISO/TC 207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 표 1 〉 환경경영 국제표준화 작업추진 현황

명칭	과 제	완료시기(예상)	ISO NO
SC 1	환경경영체제(EMS)	95년 6월	ISO 14000 – 14009
SC 2	환경감사(EA)	95년 6월	ISO 14010 – 14019
SC 3	환경라벨링(EL)	96년 – 97년	ISO 14020 – 14029
SC 4	환경성능평가(EPE)	98년	ISO 14030 – 14039
SC 5	전생애평가(LCA)	미정	ISO 14040 – 14049
SC 6	용어 및 정의(T & D)	96년 – 97년	ISO 14050 – 14059
SC 7	제품의 환경규격(EAPS)	미정	ISO 14060 – 14100

4. 환경라벨링(EL)

환경라벨링분과(ISO/TC 207/SC 3)의 작업범위는 환경라벨링 분야의 지침과 실무를 표준화하는 것을 포함하게 된다. 이에 대한 규격표기는 ISO/TC 207/SC 3 : 14020 – 14029 이며 구체적인 작업대상은 제3자 인증프로그램으로 당사자 주장의 환경크레임과 환경라벨링에 대한 기본원칙 이다.

4.1 환경라벨링 시행자프로그램

환경라벨링 시행자(practitioner) 프로그램의 지침과 실무를 표준화하는 작업에는 Type I, II, III가 있다.

(1) Type I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제3자가 인증하여 주는 환경라벨링 프로그램으로 인증절차에 따라 합격이 되면 환경마크를 부여한다. 환경마크를 부여받는 제품은 원료구득, 생산, 판매, 사용 및 폐기처분시 까지 제품의 전생애(LC) 주기에 걸쳐 동종의 제품부류 중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임을 입증받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임을 소비자들은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박운서 1994].

〈운영지침〉

① 자발적인 것이므로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다.

② 환경마크를 부착한 제품의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동종부류의 제품중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제품 10 – 20%만 마크를 부여한다.

③ 환경마크제도의 투명성(transparency)을 기하기 위해 환경마크제도의 시행자는 모든 관련 당사자(stakeholder)의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④ 신청자가 환경마크를 부여받아 발생되는 수입과 환경마크 관련비용(신청비, 검사비 감사비 등)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절차〉

① 신청서 작성 : 양식은 ISO/IEC Guide 28, Annex B와 유사하며 규정된 인증절차를 통해 결정된 제품부류에 합당한 기준(criteria)에 따라 신청서는 처리된다[BSI, 1993]

② 예비평가 :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은 제품기준을 검토한 후 제품기준에 적합한 입증형태(verification form)를 결정한다. 입증형태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에는 제조자가 주장하는 제품이 속하는 부류, 제품샘플의 예비평가, 공장의 QM(quality management) 및 EM(environmental management) 시스템의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 등이 있다. 이상의 검토결과를 신청자에게 통고하고 검토결과 합격되면 본 평가를 수행한다[10, 11].

③ 본 평가 :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공장의 QM 및 EM 준수여부에 관한 실제조사 및 제품 샘플의 검사 등이며 세부사항은 현재 논의 중이다.

④ 라이센스 부여 및 사용기간 연장신청 : 본 평가결과가 만족할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자와 환경마크 사용에 관한 라이센스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마크를 허가한다. 라이센스는 매 2년마다 갱신해야하며 제반조건이 부합될 경우에만 라이센스의 갱신이 허가된다.

⑤ 감시 : 라이센스 협약서에 명시된 조건들을 환경마크 사용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인증기관이나 그 대리인은 감시할 수 있다.

⑥ 라이센스 취소 : 라이센스 협약조항을 심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마크 사용자가 자진해서 환경마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라이센스는 취소된다. 단, 마크 사용자가 스스로 취소할 경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인증기관은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⑦ 기준변경 : 해당 제품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 환경마크 사용자는 변경된 기준에 의거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3년마다 기준의 변경여부를 검토한다.

⑧ 비용 : 신청비용, 검사비용, 감시비용 및 모든 환경마크 관련 제반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2) Type II 프로그램

환경크레임 및 마케팅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는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함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환경 크레임에는 요즈음 흔히 쓰이는 광고문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린 ○○", "자연과 친구인 ○○", "수질오염 없는 ○○"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구나 표현들은 실제로 이들 제품이 주장하는 만큼 환경친화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꾸어 말하면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과대선전이 되며 소비자들은 이같은 과대선전에 현혹되어 정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제품에 환경친화적인 문구가 부착되어도 이 제품들이 소비자의 시선을 유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과제는 자체적으로 환경크레임을 할 경우 그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이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심볼을 제정 해야하며 또한 크레임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입증시험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광의의 목적은 재화와 용역의 소비와 관련하여 환경적 부담과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환경

크레임 사용상의 이해를 돕고 통일성을 갖기 위함이다[이건모, 1994].

한편 기대되는 혜택에는 진실하고 비기만적인 환경크레임, 비보증크레임의 예방 또는 최소화, 소비자 혼동의 감소, 환경적으로 개선된 제품과 공정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잠재력의 향상, 국제무역의 제한과 장벽의 감소 및 구매자에게 선택의 정보를 확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운영지침〉

① 일반적 지침 : 환경광고나 표시에 사용되는 표현은 소비자를 오인하거나 혼동시키지 않아야 하고 그 효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효능을 명시해야 한다.

② 환경크레임의 입증 : 환경크레임은 적절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객관적 입증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용되어서는 않된다.

③ 환경크레임의 관련성 : 제품과 관련이 없는 환경크레임은 주장할 수 없으며 환경크레임은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과의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크레임의 관련성이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④ 일반적 환경크레임 : 광범위하게 환경에 유익하다는 표현은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적 안전", "그린", "무공해", "지구친화적", "돌핀친화적", "환경친화적" 등의 표현은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애매모호하고 구체적이 아닌 환경크레임은 사용될 수 없다. 끝으로 제품 생애주기평가(LCA)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한 총체적인 환경적 우월성에 대한 일반적인 환경크레임을 해서는 안된다.

〈특정용어의 정의〉

① 재활용가능(recyclable) : 쓰레기의 기존흐름과정을 통하여 수집되고 처리되어 원재료 또는 제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이나 포장을 말한다. 수집시설을 주민의 30%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② 재활용물질(recycled materials) : 쓰레기로 버려져 폐기된 물질이 수집되어 제품의 재료로 재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재활용 함유율은 소비전(pre-consumer) 물질과 소비후(post-consumer) 물질로 구분하고 오직 소비 전, 후 물질만 재활용 함유율 산정에 쓰이며 산업스크랩은 쓰이지 않는다. 모든 크레임은 소비 전, 후에 관한 구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제품과 포장에 관한 재활용 함유율은 각각 별도로 해야 한다.

③ 리필가능(refillable) : 원래의 제품형태에 추가적 공정이 없이 동종 제품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이 크레임은 사용된 제품의 수집 프로그램과 시설이 구비되었을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④ 퇴비화가능(compostable) : 미생물의 자연적 대사작용으로 분자가 붕괴되고 동질적인 분해를 거쳐 부식토로 되어 토양개량제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모든 크레임은 퇴비화 시설/공정의 유형을 명시해야 하고 전체 제품이 퇴비로 되지 않으면 퇴비화되는 구성물질을 명시해야 한다.

⑤ 고형쓰레기 감소(solid waste reduction) : 고형쓰레기 감소 크레임은 시장으로 들어가는 물질의 양적 감소와 관련되며 재활용을 통한 방법이 아닌 쓰레기 발생의 감소에

초점을 둔다. 또한 이 크레임은 무제한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명백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⑥ 에너지절약(energy-conserving) 및 에너지효율(energy-efficient) : 동종의 제품보다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성능시험방법이 확인되지 않으면 무제한적인 크레임은 사용될 수 없다. 이 용어는 크레임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추가적 정보가 충분히 수반되어야 한다.

⑦ 물절약(water-conserving) : 동종 제품보다 물을 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능시험 방법이 확인되지 않는한 물절약에 관한 무조건적인 크레임을 해서는 안된다.

⑧ 분해가능(degradable) 및 생분해가능(biodegradable) : 분해가능 제품/물질은 폐기되었을 경우 환경에 쉽게 동화되는 물질을 말한다. 생분해가능 제품/물질은 주로 곰팡이나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을 통하여 분자가 파괴되는 유기물질을 말한다. 생분해의 크레임은 물질의 성분이 분해되는 환경에 생분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⑨ 자원사용의 감소(reduced resource use) : 자원감소 크레임은 제품 및 구성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물질, 에너지, 물 등의 양적인 감소와 관련되며 이 크레임은 전생애주기 분석과 관련하여 순수한 환경적 혜택을 나타내야 한다. "자원효율", "저자원사용"과 같은 크레임은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제품과 비교한 상대적인 것을 나타내야 한다.

⑩ 지속가능한 산림(sustainable forest) : 지속가능한 산림은 미래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현재의 수요를 맞추는 산림의 관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폭이 넓고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며 다른 지속가능한 자원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⑪ 조립분해(disassembly) : 조립분해의 크레임은 제품이 재활용, 재사용의 범주로 투입되는 마지막 시점에서 분해되도록 설계되었을 때 사용한다.

⑫ 보증크레임(endorsement claims) : 특정 제품을 구매함이 특정환경 프로젝트나 자선기금을 도우는 것이라는 크레임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 프로젝트나 기금주체, 자원의 성격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8, 13].

(3) Type III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정량화된 제품정보(quantified product information)라 칭하며 이는 제3자인 시행자(practitioner)가 제품의 전생애(원료구득, 수송, 제품생산, 판매, 사용 및 폐기처분) 동안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에너지 사용량등을 기 선정된 지표(pre-set indices)별로 숫자화하여 제품카드(product card)에 나타내는 제도이다[Helmut, 1993].

여기서 기 선정된 지표는 자원 및 에너지 사용량과 오염물배출량으로 대별되며 자원 및 에너지 사용에는 천연자원과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포함한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에는 대기오염 배출량, 수질오염 배출량 및 고형물 발생량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바로 미국에서 시행되는 식료품 라벨에 붙은 영양소 정보와 동일한 개념이다. 따라서 두 종류 이상의 동종제품을 비교할 경우 소비자는 어느 제품이 환경에 더적게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에 상응하는 철저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환경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4.2 환경라벨링 프로그램과 표준화

ISO/TC 207/SC 3의 조직은 3개의 소그룹(Working Group: WG)으로 구성되어 있다. WG 1은 환경라벨링 시행자 프로그램의 지침과 실무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Type I, III 시행자 프로그램을 WG 2는 당사자가 환경크레임을 주장하는 Type II 시행자 프로그램이 사용되기 때문에 (1) 용어 및 정의 (2) 사용될 수 있는 심볼 (3)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등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 한편 WG 3은 환경라벨링 일반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화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1) WG 1

이 소그룹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은 (1) Type I과 Type III 프로그램의 채택 여부이다. 이는 Type I 프로그램이 무역규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Type III 프로그램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2) 환경라벨의 국가간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으로 각국은 자국의 환경용량, 사회적 선호도 및 능력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이나 정책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서로 다른 환경기준하에 있는 각국 환경라벨이 상호인증되는 체제가 되면 자국의 환경라벨링 제도를 수행해 나갈 수 없게 된다. (3) 라벨링과 환경규제와의 관계는 제품의 경우는 최소기준으로, 제조공정이 수행되는 국가나 지역의 환경적 요구에 따르는 경우에만 환경라벨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삼성경제연구소, 1993].

(2) WG 2

이 소그룹은 환경크레임 및 마케팅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는데 환경크레임은 제3자가 아닌 자체적으로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시행하는 관계로 이에 따른 과제는 자체적으로 환경크레임을 할 경우 사용되는 (1) 용어와 그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2) 크레임을 할 경우 사용될 수 있는 환경심볼을 제정하며 (3) 크레임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입증시험방법을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3개의 소과제를 수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WG 3

이 소그룹의 과제는 환경라벨링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며 표현문구나 자귀를 통합하게 되며 이를 수행하므로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속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장성을 자극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이에 따른 환경라벨링의 제 원칙은 (1) 환경라벨링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하고 (2) 전생애주기평가(LCA)를 환경라벨링의 정보제공 도구로 사용해야 하며 (3)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이 있을 때 그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며 만일 ISO 표준이 없는 경우는 반복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방법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이상연, 1993].

5. 환경라벨링 프로그램의 영향

ISO/TC 207/SC 3에 환경라벨링에 대한 ISO 14020 -14029 시리즈가 표준화 문서에 제정되면 그 자체는 권장사항이지 강제적인 시행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기업이

나 사용자가 이 표준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속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가규격으로 채택되거나 국내 또는 국제 거래에서 이에 대한 요구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실제로 적용을 받게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이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익이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제3자인 공인기관이 부여하는 환경마크제도는 ISO 표준이 제정되어도 각국의 환경경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자간 상호인증체제가 존재할 수 없으며 이는 바로 합법적인 무역규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게되고 자발적인 환경크레임도 이 규격에 부합되고 시험방법에 따라 입증된 경우에만 제품의 상표에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표준화 작업에는 EU(독일, 프랑스, 영국)와 북미(미국, 캐나다)의 두 세력간에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EU가 자신들의 높은 환경기준에 부합되는 국제적기준을 설정하고져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가 이에 대한 반대세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도 자신들 보다 낮은 환경기준의 국가를 상대로 할 경우에는 EU와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들이 자국산업의 보호측면에서는 환경정책 및 국제적인 기준을 무역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타국에서는 이를 무역규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북미측이 자유무역을 선호하고 EU측이 보호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박운서, 1994].

6. 결론

ISO/TC 207/SC 3는 무역과 환경에 연계된 GR에 환경라벨링 시스템의 기술적인 표준화 문서를 제공해야 할 사명을 갖고있다. 이 기술표준화 문서 작성시 환경경영 수준이 높은 국가(EU)들과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북미)들 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어 표준화 작업은 이 양대세력의 대립과 타협의 장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립과 타협의 역학 관계를 최대한 이용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기술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상호인증이 불가능하므로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큰 Type I 환경라벨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국제표준이 높게 설정되지 않도록 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의 환경라벨링 기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그 획득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해 놓아야 한다. 또한 Type III 환경라벨링 프로그램은 제 3자 인증획득의 불확실성과 무역장벽의 가능성이 높은 Type I 프로그램의 대안으로써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조자나 판매자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크레임 및 마케팅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Type II 환경라벨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용어정의와 환경심볼을 제정하고 크레임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입증시험방법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운서 (1994), "국제 환경논의 동향과 대응책," 환경경영 조찬 자료집.
[2] 삼성경제연구소 (1993), 「ISO 9000 해설과 실무」, 21세기북스.
[3] 안중우 (1994), "그린라운드와 전생애평가(LCA)," 경영계 6월호, pp. 10-13.
[4] 이건모 (1994), "국제 환경경영 표준화 동향," 경영계 6월호, pp. 6-9.
[5] 이상연 (1993), 「ISO 9000 해설」, 청문각.
[6] 한국경영자총협회 (1994), 환경경영을 위한 세미나, 경영자총협회.
[7] 한국표준협회 (1994), 국제 환경경영표준화 설명회, 표준협회.
[8] Antoine, T. and Wilhelm, P. (1991), *Research & Development for The Standardization*, EN.
[9] BSI (1993), *General Criteria for Certification Bodies Operating Product Certification: EN 45011*, EN.
[10] BSI (1993), *General Criteria for Certification Bodies Operating Certification of Personnel: EN 45013*, EN.
[11] BSI (1993), *General Criteria for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EN 45014*, EN.
[12] Helmut, R. (1993), "Standardization and Certification in Europe - 1993 and Beyond," *ASTM Standardization News*, No. 6, pp. 13-18.
[13] Repussard, J. (1992), "Testing and Certification Bodies: Achieving Mutual Recognition," *EOQ Quality*, No. 1, pp. 23-28.